



〈특집Ⅱ : 축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 낙농육우업계 입장

개방농정과 환경규제의 이중주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지도부 차장

지난 5월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역대 유례없는 규제의 칼날을 축산농가를 향해 빼들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니라 공장 폐수로 단정 지으면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폐쇄 명령, 과징금 신설,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가축배출시설 허가신고체제 개선,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갖가지 규제정책을 내놓았다.

환경부가 일방통행을 거듭하는 동안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시 되는 대목들은 이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무허가 축사 문제를 들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과 축산 실정과 동떨어진 건축법령으로 인해 사실상 50% 이

상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들을 축산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반면, 농식품부는 축산업등록제를 예를 들어 무허가라도 가축사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환경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발과 생산 중심의 시대를 지나면서 환경을 위한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비켜나가길 바라는 축산농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숙명인 환경부가 4대강 수질오염의 올가미를 축산농가에 씌우면서까지, 축산업이 처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정책을 양산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1. 낙농산업 생산기반 악화, 환경 규제도 한 몸



최근 발표한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소비한 우유소비량이 1인당 70.7kg으로 나타났다. 반면 쌀은 71.2kg으로 조만간 우유가 제1의 식량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10년 전 75%에 달했던 자급률이 50%대로 추락하였다는 것이다.

매년 낙농호수가 감소하여 6천호 남짓 남았고 국내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유제품 수요는 늘어나면서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신선한 우리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유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목장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실시한 2011년 낙농기초 조사연구 결과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낙농목장의 약 62%가 평지농촌, 도시근교에 분포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장 이전 수요는 조사농가의 17.7%로, 이중 도시개발, 환경문제로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약 4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목장이전도 환경규제, 민원 문제 등으로 만만치 않은 실정으로 간척지를 이용한 낙농단지 조성 문제가 낙농가들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장의 입지조건>

도시 농촌	평지 농촌	중산간 지역	산간 지역	기 타
11.1%	50.7%	28.1%	9.2%	0.9%

2.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및 대책방안

환경부의 가축분뇨 개정법안의 최대 쟁점은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에 대한 사용증

<축종별 무허가축사 보유 현황>

(단위 : m², %)

축 종	전체축사면적 (A)	무허가축사면적 (B)	무허가축사비율(%) (B/A)
오 리	470,021	335,703	71.4
육 계	566,176	340,874	60.2
젖 소	342,249	187,597	54.8
한육우	555,593	226,643	40.8
산란계	172,715	64,133	37.1
돼 지	508,356	91,614	18.0
계	2,615,110	1,246,564	47.7



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 신설과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이 주요골자이다.

무허가 축사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의한 것이 대다수여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잣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6월 전국 60개 시군의 전업규모 이상인 1,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면적의 47.7%가 무허가로 나타났으며 무허가 축사비율은 오리 71.4%, 육계 60.2%, 젖소 54.8% 순으로 나타났다.

△ 낙농현실을 무시한 건축관계법령 개선 필요

낙농목장의 무허가 비율이 높은 것은 건축관계법령이 낙농현실을 무시하고 사람 기준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젖소 비가림 운동장의 가설건축물 적용문제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구조는 천막과 비닐로 국한되어 있고, 바닥의 경우 철골 구조물(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가림 운동장 지붕을 비닐로 할 경우 기후에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썬라이트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닥의 경우 가축분뇨의 지하침투 방지 등을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축사간 처마 및 지붕을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방형 축사

에서 빗물유입 방지 등을 위해 축사간 지붕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피 한데도 건축법상에는 당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고 이를 예외적용하는 법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건폐율 문제인데, 국토법상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20~40%로 되어 있고 축산용시설(농지법상)은 최대 60% 까지 시군 조례로 운용토록 되어 있지만 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제로 60%까지 건폐율을 적용하는 시군의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밖에도 소방관련법규의 축사간 거리제한(3m) 규정, 불법축사 철거시 과도한 행정처분 문제 등 현장과 건축관계법령과의 괴리는 큰 상황이다.

농식품부도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축법상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 대해서는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건축법 및 국토법 개정 및 특례조치를 시행하여 선량한 양축농가들을 보호해야 한다. 건폐율 상향조정, 가설건축물 인정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 연장, 불법축사에 대해 유예기간 설정 및 처벌 완화, 축사간 거리제한 제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 및 침유세척수 처리방안 마련 필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양돈 농가 뿐만 아니라 낙농가들에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낙농목장에서 발생하는 침유세척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액비화 또는 간이 정화처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착유세척수를 액비화할 경우 가축분뇨법(표 참조)에 따라 초지확보, 2단계의 저장조 설치, 액비살포 금지 조항에 따라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액비화를 통해 세척수를 처리하는 농가는 20% 미만이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착유세척수를 간이정화조를 이용해 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간이정화조 시스템으로는 착유기, 원유냉각기에서 발생하는 착유세척수와 분뇨가 배설된 착유실 바닥의 세척수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분뇨지원 시책이 양돈중심으로 쓸림에 따라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등한시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선 T-N(총질소) 함량을 환경부 기준에 따라 250PPM으로 강화하기에는 현재 기술개발과 현장지원이 극히 미미한 실정임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세척수 정화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비용이 목장당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적용 이전에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액비처리, 정화처리, 공공처리 등 사례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세척수 처리 지원정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착유세척수액비 자원화 관련 규정〉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 8조(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의 면적)

구분	초지	농경지	
		논	밭·과수원
젖소 (m ² /마리)	1,330이상	2,550이상	1,650이상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 10조(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 13조(액비살포기준)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액비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축분뇨법 개정, 충분한 논의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아

금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내포하고 있



는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축산단체, 축산조합, 축산관련학회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문제를 인식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한 바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한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사례와 같이 농정부처는 개방농정, 환경부처는 규제강화로 축산농가들의 목을 계속적으로 조여만 가서는 낙농산업, 축산업이 설자리가 없다. 규제를 만드는 일이 많은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산업계와 부딪

히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다. 어떻게 보면 반대와 갈등은 규제부처인 환경부의 숙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방통행식은 곤란하다. 금번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분한 것은 환경부가 법 치의 힘을 빌려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다스리겠다는 의도 그 자체였다.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분뇨처리 자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 정책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

